원격수업 및 원격강좌 운영 규정

제 정 : 2011. 06. 01.

제6조(취득학점 제한)

① 본교 학생은 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재학 기간 동안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총 3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는 제외한다.[2017.02.08.개정][2018.01.17.개정, 2024. 9. 4.]

②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를 이수한 경우, P/F 과목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. <개정 2026. 9. 2.>

③ 삭제 <2026. 9. 2.>

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년별 취득학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25. 7. 15.>

제6조의2(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학점인정)

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한 강좌의 총 수업 시간은 1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한다.

②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의 학점인정 기준, 이수구분, 신청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(K-MOOC)이수 학점인증 운영 내규」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6. 9. 2.]